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7.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10월 2일
- 나.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6명
-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15일
- 라. 상정일자: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쉼터의 설치·운영 (안 제4조)
  - 위탁 (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안은 휴게공간이 없어 불편한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한 쉼터 조성 근거를 명시

하며 그 쉼터의 기능으로 휴식 및 안전망 확보, 복지서비스 확대, 건강 보호 등을 열거함.

- 안 제5조는 필요시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가능함을 규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수립하였음.

#### ○ 검토 결과

- 2022년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갖추야 하며 그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였음.
- 그러나 배달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은 이동노동자들은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마땅한 휴식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통해 상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지원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우리 구(區)는 현재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에 휴게공간을 조성(개소일: '23.9.27.)하여 편의용품(마사지기, 혈압기,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2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임.
- 현재 쉼터의 운영 시간은 배달노동자, 택배기사 등과 같은 이동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평일 10시부터 21시까지이며 운영 인력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바, 향후 쉼터의 신규 조성 및 장기 지속 운영을 고려한다면 본 조례안에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배달 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지원 근거를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한 바,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여겨짐.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614 |
|----------|-----|

발의연월일: 2025. 10. .

발 의 자: 이규선·김지연·전승관·임헌호

최인순·이순우·정선희 의원(7인)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쉼터의 설치·운영 (안 제4조)

라. 위탁 (안 제5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논의필요

다. 입법예고: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방문요양보호사,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써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3.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이동노동자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냉·

난방 관련 물품(생수, 방한장갑 등) 지원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5조(위탁)** 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